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년월일 : 1998. 9. 17.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이유

행정여건 변화 및 관련법규 개정등으로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사망한 자가 포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가. 포상의 종류중 “질서상”은 현실에 맞지않아 “표창장”에 포함하여 시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4조).

나.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다. “별지4호서식”의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중, 산업근로부문 추가 (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상훈법 제33조, 정부표창규정 제18조

나. 부산광역시포상조례 제4조 및 제14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질서상”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별지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지 제4호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시 상 부 분	선 정 기 준
<p>효행선행상</p>	<p>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을 위해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에 회사하신 분 ○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을 다년간 운영해 오신 분 ○ 의로운 일을 해내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분 ○ 노부모 봉양 및 불치병 간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분 ○ 기타 효행과 선행에 있어 타 주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
<p>교육문화상</p>	<p>교육문화 발전과 건전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 교육과 선진교육 추구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분 ○ 내고장 전통문화 발굴, 제승 등 향토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한 분 ○ 기타 교육문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도의양양에 기여한 분 ○ 기타 타의 귀감이 되는 분
<p>산업근로상</p>	<p>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한 근로자 또는 경영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분 ○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 ○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 ○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획득에 공이 많은 분 ○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모범 경영자 ○ 기타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u>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구민상은 <u>효행선행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u>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p> <p>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p>	<p>제4조(포상의 종류) <u>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u></p>
<p>제6조(질서상) ① <u>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u> 2. <u>공중도덕 준수</u> 3. <u>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u> 4. <u>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u> 5. <u>기타 도시질서 확립</u> <p>② <u>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p>(삭 제)</p>
<p>제14조(포상시기) ①~③(생략)</p> <p>④ <u>제6조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u></p>	<p>제14조(포상시기) ①~③(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신 설)</p>	<p>제14조의2 (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추서 할 수 있다.</p>

(별지4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시 상 구 분	선 정 기 준	시 상 구 분	선 정 기 준
효 행 선행상	(생 략)	효 행 선행상	(현행과 같음)
교 육 문화상	(생 략)	교 육 문화상	(현행과 같음)
(신설)	(신 설)	산 업 근로상	<p style="text-align: center;"><u>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한 근로자 또는 경영자로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분 ○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 ○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 ○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 획득에 공이 많은 분 ○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모범경영자 ○ 기타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